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안전·위생교육 의무화〉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69호)

2024.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전완희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안전·위생교육 의무화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재원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4. 9. 6.
3. 회 부 일 : 2024. 9.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사업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 한옥체험업자, 관광펜션업자, 호스텔업자 및 농어촌민박업자가 있음. 이 중 관광펜션업자 및 호스텔업자의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농어촌민박업자의 경우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매년 안전 및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 및 한옥체험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과 관련 다른 법률에 안전 및 위생교육 관련 규정이 없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하는 안전 및 위생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안전 및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민박업의 안전·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3호라목 및 마목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안전·위생교육 의무화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정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에 대한 안전 및 위생 교육을 의무화하여 민박업의 안전·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3조제1항제3호라목·마목 및 제20조의3 신설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 다. (생략) <u><신설></u>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u>

<신 설>

4. ~ 7.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86조(과태료) ① (생 략)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
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
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마. 한옥체험업: 한옥(「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전통 놀이 및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안전 및 위생교육) 제4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신설>	3.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 및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여, “숙박업”도 공중위생영업자로서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그런데 동 법은 “숙박업”에서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과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등은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¹⁾ 「농어촌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7조(위생교육) ①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대상) ①「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의 경우 해당 법에서 서비스·위생·소방안전 등 수준 제고를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지만,²⁾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경우 위생·안전 등 교육에 대해 규정된 바 없음.³⁾

2023년도 말 기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2,714개소, “한옥체험업”은 1,930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옥체험업”은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인 “한옥”을 체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외래관광객 유치 및 국가

-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위생교육) ① 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되,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 ② 위생교육의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기술교육,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한다.
-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위생·소방안전 등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서비스·안전기준 및 교육) ② 법 제86조의2제3호에 따른 교육은 매년 3시간 실시하되, 소방·안전 교육 2시간, 서비스·위생에 관한 교육을 1시간 실시해야 한다.
- 3)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소방안전, 위생 등에 관한 기준은 규정하고 있음.

구 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소방안전	소화기,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취사시설설치 시 가스안전, 화재예방, 소방시설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
위생	-	수돗물 또는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먹는물 등 공급 시설, 월1회 이상 소독, 수시 청소·세탁, 환기 시설, 욕실 원수는 목욕물 수질기준에 적합
관리운영	외국어 안내서비스	관리자 배치, 숙박요금표 게시

이미지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종합휴양업 등 전문 숙박업종과 다르게 한옥 또는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 등을 제공하는 특성상 위생·안전·서비스 등 교육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등록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2021년 말	2022년 말	2023년 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880	2,044	2,714
한옥체험업	1,508	1,730	1,930

* 지자체 제출자료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럼에도 위생·안전 등 교육이 「관광진흥법」상 의무교육으로 규정되지 않아 2023년의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총 4,644개소 중 한국관광공사가 시행하는 ‘위생·안전 교육’을 수료한 인원은 543명(전체 개소 중 11.69%)에 불과했으며, 관련 예산도 2020년 1억 1,500만원에서 2023년 9,000만원으로 감소하였음.

[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교육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020	115	한국관광공사	314명 수료 (오프라인 77명, 온라인 237명)
2021	60	한국관광공사	132명 수료 (온라인 132명)
2022	60	한국관광공사	518명 수료 (오프라인 332명, 온라인 186명)
2023	90	한국관광공사	543명 수료 (오프라인 319명, 온라인 224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위생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해당 업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수강률을 제고하고, 안전·서비스 수준을 높이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⁴⁾.

또한, 개정안은 ‘안전 및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와 ‘한옥체험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숙박업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서비스·안전·소방안전 등 수준 제고를 위한 교육을 받지 않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 및 ‘한옥체험업자’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민박업자로서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 금액 수준을 규정한 것으로 보임.⁵⁾

다만, 안 제3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정의에서 ‘숙식 등의 제공’은 이 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정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정의 등을 참고하여, ‘숙박, 숙박에

4)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협회’와 ‘한옥체험업협회’에서도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5)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과태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6.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농어촌정비법」 제13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86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팔린 음식이나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⁶⁾

문 의 처

02)6788-5377

6)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